

2019년도 제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20.(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9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29건(안전번호 제2019-51542호~5331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9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 없으며,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이의 없으며,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51542호~5331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629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 '이글루스' 이용자가 일본 만화 '☆☆☆☆☆ ☆☆' 2권의 한글 번역본을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 A 위원 : 우리말 번역을 누가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번역자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한 것인지, 게시자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올린 것인지, 국내 번역되어 출판된 것을 본인이 번역했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은 의견이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1542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51543호는 일본 만화 ‘◆◆◆◆ ◆◆◆’ 제1화의 전체분량 37페이지 중 35페이지를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게시물 제목이 ‘△△△△ △△ △△△△△ △△ △△ △△’으로 되어있지만 제목과 달리 감상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움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블로그 이용자인 본인이 게시된 만화를 우리말로 직접 번역한 것처럼 스탬핑을 하였으나, 국내 판매 중인 한글판 합법 저작물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 B 위원 : 게시물에 로고를 삽입하는 것은 번역한 본인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미지 검색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침해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로고를 삽입하기도 함
이미지 중간에 노이즈를 삽입하게 되면 다른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회피할 수 있음
페이지 중간마다 로고를 넣는 이유는 로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임
- A 위원 : DNA값이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고의성이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음
- B 위원 : 대부분의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 실력을 알리기 위해 로고를 삽입하는 목적도 있지만 모니터링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합법 저작물과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번역한 것이 아님
우리말로 번역된 원 저작물과 블로그에 게시된 저작물의 번역이 일치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데 이의 없음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데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1543호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51544호~5331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만화, 출판,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게임, 영상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의 없음
- C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데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1544~53314호는 계

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51542호~53314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 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6. 2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